때론 데스크에 의해 익명 보도가 '창조'될 때도 있다. 특히 이른바 '조지는' 내용일 경우 코멘트가 가필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당 안팎에서는 ~는 비판이 나온다.'는 식이다. 이 경우 기자 개인의 비판적시각이 당 안팎의 여론으로 순식간에 둔갑하게 되는 것이다.

# 기자와 데스크가 익명 관계자 만들어선 안돼

기자가 본 익명보도

강민석 · 중앙일보 탐사기획팀 기자

"거 당히 소주 한잔 먹고 우리 기사 잘 써주면 고맙고, 내 이름 한번 내주면 더 고마운 시대는 끝나야 한다."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진 워크숍에서 강조한 내용 중 일부다. 맞기도 하고틀리기도 한 얘기다.

일단 노 대통령의 지적대로 취재원 가운데는 이름을 내주면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게 사실이다. 인기를 먹고 사는 직종의 인사-대표적으로 정치인-들에겐 실제 '욕먹더라도 이름 석 자 나오는 게 더 낫다. 가장 나쁜 것은 이름이 안 나오는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 지적처럼 모든 취재원이 자신의 이름이 기사에 등장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다. 예컨대 대대적 개혁을 앞둔 시점에서 초대 민변회장 출신으로 개혁성을 지닌 고 변호사가 강력히 추천된 상황"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거쳐 이르면 25일 중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당초 고 변호사를 새 정부 부패방지위원장으로 내정했다가 24일 전격적으로 이남주한국 YMCA전국연맹사무총장으로 교체, 발표했다.

정찬용 인사보좌관은 고 변호사에서 이 총장으로 선회한 배경과 관련, "고 변호사가 고사 의사를 전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 변호사는 24일 밤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부방위원장직에 대해)딱히 고사 의사를 전한 적은 없다."고 정 보좌관의 설명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중앙일보 2003년 3월25일자 1면 보도).

'정치권 관계자'란 표현이 기사에 등장했다고 가정해 보자. 여기서 관계자란 대체로 누구일까?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나 비서관, 정당 사무처 요원, 공무원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전부는 아니다. 해당기자의 '동료기자'들도 범주에 포함되는 듯하다.

내부 고발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비밀스런 정보를 흘린 경우다. 기자에게 특종 정보를 준 취재원이 자신의 이름이 공개되길 원하겠는가. 당장 조직내부와 해당 기자를 제외한 모든 언론에게서 눈총을 받게 될 게 뻔한데 말이다.

익명보도의 필요성은 대개 이럴 때 발생한다. 필자는 올해로 언론계 입문 14년째를 맞았다. 그 중 절반이상을 정치부에서 근무했는데, 그 기간 동안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익명 인사들을 무수히 등장시켰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사례1) 새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에 고영구 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24일 오후 국정원장 인선을 위한 회의를 열고 신임 국정원장 후보로 고 변호사와 이 현재 전 재경부 장관 등 2 명을 압축했다고 한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정원 국내 사찰 금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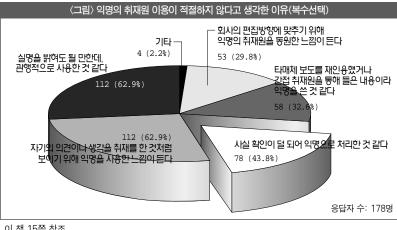
필자가 작성했던 이 기사에는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등장하고 있다. 필자가 이 취재원을 익명으로 처리한 것은 조직내부와 여타 언론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만약 취재원이 노출될 경우 다음부턴 그취재원이 해당기자에게 입을 다물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나중에 사실로 드러났다. 아무튼 당시익명의 관계자를 등장시켰으나 별로 시비는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만약 기사가 결과적으로 오보가 됐다면 사정은 좀 달랐을 것이다.

# 익명보도 용인의 일차적 기준은 진실성

결국, 익명보도가 용인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일차적 기준은 기사의 진실성에 달려 있는 것 같다. 기사가 진실하다면 익명이니 실명이니 하는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으론 출입처 성격에 따라 익명보도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예컨데 청와대 가 대표적이다. 비서는 입이 없다.' 청와대 비서진의 근무 철칙이다. 청와대 대변인 외 에 수석비서관이나 보좌관들 이 어떤 사안을 설명하기 위 해 백 그라우드 브리핑을 할 때도 대부분 익명보도를 전제 로 하고 있다. 그래서 별로 예 민하지 않은 내용인데도 대변 인 등의 공식발표를 제외하곤



이 책 15쪽 참조.

'관계자' 등의 익명보도가 관례화되고 있다.

정보기관은 청와대 보다 더 엄격한 비밀 준수 의무 가 요구된다. 지난해 중앙일보 탐사기획팀은 '국정원 바로서려면 이란 기획기사를 작성한 일이 있다. 필자 를 포함한 4명의 기자가 두 달 이상 전 · 현직 정보맨 50명을 직접 만나 국정원의 문제점과 개혁방향에 대 한 견해를 듣고 이를 취합해 기사화했다. 3일에 걸쳐 시리즈 기사가 게재되는 동안 그 넓은 지면에 실명으 로 보도된 사람이 극히 드물었다. 취재팀이 만난 50명 의 의견을 모두 익명화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 문이다. "무덤까지 비밀을 가져간다."며 아예 접촉을 피하려는 국정원 출신 인사들을 만나 증언을 듣기 위 해선 사전에 비실명 보도를 약속할 수밖에 없었기 때 문이다.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익명보도

이밖에 사건 관련 보도에도 익명이 요구될 때가 많다. 어떤 사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 일 때, 성년이라도 성 폭행 사건이라든지 피해자의 명예를 지켜줘야 할 사 아일 때가 그런 경우다.

대개 정치인 ·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와 같은 공인 의 경우 실명 보도가 원칙이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 일 경우에는 익명으로 보도한다. 예컨대 고위층 부인 에게 보석을 팔며 보석대금을 횡령한 사건의 피의자 가 "전직 총리의 부인에게 보석을 팔았다."고 주장할 경우 전직 총리 이름을 그대로 옮기기 어렵다.

또한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기사도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가 있으므로 익명보도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종 종 과장되게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향이 있어 보도 자료 등의 공식적인 내용을 기사화하더라도 당사자가 차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실명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김훈 중위 사망사건 보도가 대표적이다.

일반인이나 하급 공무원이 어떤 사건의 당사자일 경우에도 실명을 보도하는 게 큰 실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 익명으로 보도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사회적 범죄 혐의가 지면에 비중 있게 다뤄질 경우 일반인 · 하급 공무원의 경우도 실명으로 다뤄진다. 굿모닝 시 티 사건과 관련해 유창열 씨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 고 유 씨의 도피를 도운 서울지검 7급 직원, 경찰에 대 한 로비를 맡았던 사람 등이 실명으로 보도된 것을 예 로들수 있다.

법인의 경우는 어떨까? 만약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 록기업의 현직 대표나 대주주가 구속됐다면, 해당기 업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해당 주주들에게 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회사 이름 등을 반드시 실명으로 보도한다. 그러나 해당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당연히 익명으로 처리한다. 또한 기업이 조 직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직원 개인의 문제였다 가정해 보자. 여기서 관계자란 대체로 누구일까? 국 면 가급적 회사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불필요한 익명보도 남발

문제는 취재원 보호 등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경우. 앞서 열거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익명보도를 남발하는 경향일 것이다. 또한 익명으로 보도할 이유 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익명 보도가 과잉일 때는 기 사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일단 정치기사에 등장하는 익명보도의 사례를 보 자. 정치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의 주인공들은 대략 수 십 종류는 되는 것 같다. 우선 '청와대 고위 관계자' 와 어떨 땐 기사를 작성한 해당기자가 익명의 관계자로

회의원,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나 비서관, 정당 사무처 요원, 공무원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들이 전부는 아니다. 해당기자의 '동료기자' 들도 간 혹 정치권 관계자의 범주에 포함되는 듯하다. 최근엔 드물어 보이지만 기자실 안에서 기자들끼리 나눈 얘 기들이 정치권 관계자 등의 코멘트로 처리되어 나온 적이 과거에는 꽤 있었던 것 같다. 하긴 정치부 기자 들도 엄연히 정치권과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므로 정 치권 관계자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른다.

# 기자가 익명의 관계자로 둔갑

모든 기사를 실명으로 보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때론 기자에게 위험한 권력이 될 수도 있는 익명보도는 최대한 자제되는 게 옳다. 그러려면 익명보도를 최소화하겠다는 기자와 데스크의 인식공유가 일차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있다. 여기에 그냥 '청와대 관계자'도 있다. 마찬가지로 정당 쪽에는 '당 고위 관 계자', '당 핵심 관계자', 그리고 역시 그냥 '당 관계 자 가 단골이다.

어쩔 땐 청와대 쪽인지 정당 쪽인지 기관명도 밝히 지 않은 '여권 핵심관계자', '여권 고위관계자', 그냥 '여권 관계자'가 기사에 나온다. 아예 '정치권 관계 자'라는 정체불명의 인사도 있다. 여기에 '핵심'대신 '유력'. '관계자' 대신 '인사'를 대입할 경우 등장인 물은 더욱 늘어나 '유력 관계자', '유력 인사'란 말이 탄생할 수 있다.

보통 익명의 관계자들은 '~알려졌다', '~전해졌 다'로 시작되는 기사와 찰떡궁합이다. '~알려졌다'. '~전해졌다'라 표현이 사라지지 않는 한 다양한 유 형의 익명의 관계자들의 출현은 계속될 것이다.

이 중 '정치권 관계자' 란 표현이 기사에 등장했다고

둔갑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일부 기사를 읽다보면 '도대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할 익명의 인사가 누굴 까' 하고 갸웃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례2) …청와대 핵심 인사는 "노 대통령은 재·보선 결과를 지켜본 뒤 앞으로의 정국운영 방향과 여권 내 역학 구도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낼 것"이라고 전했다.…

모 일간지 정치 해설기사 중 한 대목이다. 뭐 내용 에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다만 실제 정 치부 기자로 활동해 보니 이 작은 문장 안에서 몇 가 지 의문이 든다. 일단 정국운영 방향이니 역학구도니 하는 말은 주로 신문 해설기사에 등장하는 문어(文 語)다. 정치인들이 실제로 즐겨 쓰는 표현은 아니다. 더욱이 '청와대 핵심인사라는 사람이 이런 단어를 실 제 사용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현 정부는 당·정 분리를 표방하고 있다. 그런 청와대에서 핵심인사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정치세력 대 세력간의 관계(역학관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려 한다'고 기자에게친절히 설명을 했을까? 더구나 청와대 핵심인사라면 '정국운영 방향'이란 말 대신 '국정운영 방향'이라고 언급했을 텐데 말이다.

'도대체 저런 정도의 내용을 쓰면서 왜 익명으로 보도했을까' 란 의문이 들 때도 많다. 역시 모일간지에 보도된 경제 기사 중 한 대목이다.

(사례3) 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이 높이질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고율이 낮았던 2001~2002년 상황을 전제로 앞다퉈 가격을 내린 게 화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가 어떤 상황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는 문장이다. 여기서 이 사람의 이름을 굳이 익명 처리할 필요가 있었을까. 익명으로 보도했을 때는 취재원 보호라든지 다른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익명으로 보도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 데스크가 익명보도 창조

때론 데스크에 의해 익명보도가 '창조'될 때도 있다. 특히, 이른바 '조지는' 내용일 경우 코멘트가 가필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데 '당 안팎에서는 ~는 비판이나온다'는 식이다. 이 경우 기자 개인의 비판적 시각이 당 안팎의 여론으로 순식간에 둔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익명보도는 종종 공방의 소재가 되기도한다.

지난해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조선일보 기자와 열린우리당 의원간에는 익명 보도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조선일 보는 철도공사와 함께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 사업 을 추진한 허문석 코리아크루드오일(KCO) 전 대표 가 "작년 7~9월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이 주도하는 역당 '신의정연구센터(의정연)' 의 에너지정책 가담회 에 세 차례 자문역으로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여러 부분에 걸쳐 의정연 소속 의원의 말을 익명으로 인용 보도했다. 그러자 의정연 간사인 이화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자체적으로 확인해본결과 의정연에 관계있는 그 누구도 조선일보 기자와기사에서 적시된 내용의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 며 "조선일보 기자는 누구와 인터뷰를 했다는 것인지 밝히라." 고 촉구했다.

해당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기자는 이에 보도자료 를 내고 "이 의원은 의정연 관계자 누구도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조선일보는 의정연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며 "다만 취 재원 보호 차원에서 이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힐 수 없 다."고 맞섰다.

과연 이 문제에 있어 진실이 무엇인지는 짐작키 어렵다. 하지만 조선일보 기자의 취재가 사실이었다고 해도 익명보도는 이렇게 역공을 당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익명보도에 관해 기자는 거의 무한대의 재량을 갖는다. 이런 자유재량 속에서 기자에겐 권력처럼 달콤할 수도 있는 게 익명보도다.

만약 기자가 이런 재량을 악용해 권력수단으로 익명보도라는 칼을 휘두르게 된다면 그것은 문장이 아니라 인터넷의 '악플' 과도 다를 바 없다.

물론 모든 기사를 실명으로 보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것은 마치 시위를 진압하는 전경 부대원들에게 모두 명찰을 달게 하는 일처럼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하지만 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때론 기자에게 위험한 권력이 될 수도 있는 익명보도는 최대한 자제되는 게 옳다. 그러려면 익명보도를 최소화하겠다는 기자와 데스크의 인식공유가 일차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익명의 그늘에 숨어있는 일부 익명보도에 대해선 독자의 예리한 검증이 피드백 돼야 할 것이다. ●